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1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901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안 제31조의2 신설)	3

I.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90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5. 19.

다. 회 부 일 : 2026. 5.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기업도시”를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음¹⁾.

개발구역은 민간기업 등이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²⁾).

한편,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2조는 시·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³⁾의 원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장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를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

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⁴⁾,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법 제33조⁶⁾는 일정 규모 이하의 촉진지구에 대하여 촉진지구 지

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정과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⁷⁾는 일정한 토지 확보 요건을 갖춘 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을 인정하며, 같은 법 제35조⁸⁾는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건축물 높이, 조경,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완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개발사업 절차와 건축규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와 정주인구를 위한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⁹⁾는 촉진지구 지정 요건으로 ①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② 촉진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③ 유상공급 토지면적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토지를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개발구역 안의 일부 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촉진지구 지정절차, 지구계획 수립·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면 현행법상 개발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법률상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촉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라남도의 질의에 대하여, 촉진지구와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른 사업지구는 지정 목적·요건, 시행자 자격, 지구계획 수립절차 등 법적 근거가 상이하고, 하나의 토지에 별개의 개발사업 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지구를 중복 지정할 경우 사업추진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중복지정 특례가 없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이 법률상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문언상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발구역의 일부를 같은 조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발구역 내 촉진지구 지정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발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 구역이고¹⁰⁾, 촉진지구에 관한 계획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

구계획 역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¹¹⁾, 개발구역의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양 계획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촉진지구 지정 시 기업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간 정합성 확보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기업도시는 주거 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제안(공모) 방식¹²⁾을 통

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인구·주택 수용계획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기업도시 내 주거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민간제안형 공모에 신청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기금 지원 가능

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¹³⁾이 가능하므로 공급촉진지구 중복 지정 특례를 신설할 실익은 낮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 민간제안(공모) 방식】

- (개요)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 (절차) 사업자 공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협의 → 기금출자 심사 → 리츠 영업 인가 → 착공·입주자 모집

13)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① 민간제안(공모) 방식, ② 택지공모사업, ③ 공급촉진지구, ④ 정비사업연계형이 있음.

참고 1

기업도시 개요 및 현황

□ 기업도시 개요

- 기업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공포, '04.12)
-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7~8월)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2개 준공**(충주, 원주), **2개 개발 중**(태안, 영암·해남), **2개 지정해제**(무주, 무안)

유 형	도시	개발구역 지정	출자기업	진행 현황	소관
지 식 기반형	충주	'07.5	포스코건설 등	준공('12.12)	국토부
	원주	'07.5	롯데건설 등	준공('19.09)	
산 업 교역형	무안	'09.1	-	지정해제('13.2)	
관 광 레저형	태안	'06.12	현대건설	개발중	문체부
	무주	'07.10	-	지정해제('11.1)	
	영암·해남	(삼호) '09.10	에이스투자 등	개발중	
		(구성) '10.1	보성산업 등		
		(삼포) '10.10	목포도시가스 등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도시 2.0)

- 지방 성장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추진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50만㎡), 절차 간소화(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등 「기업도시법」 개정('24.8.14. 시행)

도시	위치	앵커기업	내용
포항	북구 흥해읍 일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위한 산학연계 융합캠퍼스 및 기업육성공간 조성
춘천	남춘천산단 인근	더존비즈온	지식산업(IT, BT) 클러스터 조성 및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체계 구축
거제	장목면 구영리 일원	수산인더스트리, 에이텍 등	케어, 디지털, 아트 3대 핵심사업과 주거, 관광 등 정주환경을 갖춘 문화산업도시